

공 고

문화재수리기술자 행정처분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5. 5. 21.

문화재청장



<행정처분 내용>

구분	성명	자격종목 (자격번호)	처분의 내용	처분의 사유 및 근거
1	손종석	보수 제62호	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
2	오영철	보수 제198호	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
3	양경선	보수 제312호	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	<처분의 사유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 <처분의 근거> ○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